

신구조문대비표

「특허법 시행령」

특허법 시행령 [시행 2025. 10. 1] [대통령령 제35809호, 2025. 10. 1, 타법 개정]	특허법 시행령 [시행 2026. 12. 21] [대통령령 제36758호, 2026. 10. 13, 일부개정]
제19조(특허공보) ① ~ ③ (생략)	제19조(특허공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,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,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제87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특허권자,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시·군·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특허권자,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다.
⑤ 제4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,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「상표법 시행령」

상표법 시행령 [시행 2025. 10. 1] [대통령령 제35809호, 2025. 10. 1, 타법 개정]	상표법 시행령 [시행 2026. 12. 21] [대통령령 제36760호, 2026. 10. 13, 일부개정]
제14조(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) ① 법 제 82조제3항에서 “상표권자의 성명·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14조(상표공보에 게재하는 등록공고 사항) ① 법 제 82조제3항에서 “상표권자의 성명·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상표권자의 성명과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). 다만, 자연인인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.	P>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. 상표권자가 자연인인 경우: 성명 및 시·군·구까지의 주소. 다만, 해당 상표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다. 나. 상표권자가 법인인 경우: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</P>
2. ~ 16. (생략)	2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·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제19조(상표공보) ① (생략)	제19조(상표공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고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고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1.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). 다만, 자연인인 출원인의 주소는 그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.	P>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.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: 성명 및 시·군·구까지의 주소. 다만, 해당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다. 나.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: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</P>
2. ~ 15. (생략)	2. ~ 15.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청의 방법·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③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「디자인보호법 시행령」

디자인보호법 시행령 [시행 2025. 11. 28] [대통령령 제35874호, 2025. 11. 25, 일 부개정]	디자인보호법 시행령 [시행 2026. 12. 21] [대통령령 제36761호, 2026. 10. 13, 일 부개정]
제10조(디자인공보) ① ~ ③ (생 략)	제10조(디자인공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 자인권자,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 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, 디자인등 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 만을 게재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 자인권자,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주 소를 게재하는 경우 시·군·구까지의 주소만을 게재해 야 한다. 다만, 해당 디자인권자,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 전부를 게재할 수 있다.
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·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 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	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